

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(소집통지 및 공고)에 의하여 2018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 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%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8년 3월 2일(금요일) 오전 09시 00분
2. 장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2길 21(가주동) ㈜에스마크 본점 2층 회의실
(※문의 전화번호 : 02-757-9171, 내선 203)
3. 회의목적사항
 - 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
 - 나. 부의안건
 - ▶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(안)의 건 <별첨1>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당사의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 - 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: <http://evote.ksd.or.kr>
 - 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18년 02월 20일 ~ 2018년 03월 01일
 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 - 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 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 **범용 공인인증서**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 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 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개인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2018년 02월 14일

주식회사 에스마크

대표이사 신 희 주 (직인생략)

<별첨1>

정관변경(안) 신규조문대비표

	개정(안)	비고
<p>2조 (목적)</p> <p>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122. <기재 생략></p> <p><u>123.</u> 위 각 호에 관한 무역업</p> <p><u>124.</u> 위 각 호에 관한 수출입업</p> <p><u>125.</u> 위 각 호에 관한 도매, 소매업 및 서비스업</p> <p><u>126.</u> 위 각 호에 부대사업일체</p>	<p>제2조 (목적)</p> <p>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122. <현행과 동일></p> <p><u>123. 담배 제조 및 판매업</u></p> <p><u>124.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</u></p> <p><u>125. 전자담배 관련 기기, 장치 제조 및 판매</u></p> <p><u>126. 담배사업과 관련한 재료품의 제조와 판매</u></p> <p><u>127. 담배 수입 판매업 및 수출업</u></p> <p><u>128.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업</u></p> <p><u>129. 담배 등 식물종자 개발, 생산 및 매매업</u></p> <p><u>130. 금연보조제 제조 및 판매업</u></p> <p><u>131. 국내외 담배 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</u></p> <p><u>132. 액세서리 및 잡화류 등의 제조 및 판매</u></p> <p><u>133.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</u></p> <p><u>134. 중고핸드폰 및 부품 도소매업</u></p> <p><u>135. 중고핸드폰 및 부품 수출입업</u></p> <p><u>136. 전자제품 액세서리 도소매업</u></p> <p><u>137. 전자제품 액세서리 수출입업</u></p> <p><u>138. 자동차 정비 및 수선업</u></p> <p><u>139. 자동차 부품 정비 및 수선업</u></p> <p><u>140. 자동차 세차업</u></p> <p><u>141.</u> 위 각 호에 관한 무역업</p> <p><u>142.</u> 위 각 호에 관한 수출입업</p> <p><u>143.</u> 위 각 호에 관한 도매, 소매업 및 서비스업</p> <p><u>144.</u> 위 각 호에 부대사업일체</p>	<p>사업목적 추가 및 조문 번호 변경</p>
<p>부칙</p> 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<u>이 정관은 2018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